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 임시명세서 제도, 익명 정보제출서 등 〉, 2020년3월30일 시행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목차

Ⅰ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Ⅱ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

Ⅲ 국가R&D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 등 개정

Ⅳ 기타 개정 수요 반영 – 특허(등록)증에 관인 날인 추가

I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I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특허법 제42조의2)**를 이용**하는 경우 **정해진 서식 또는 기재요건을 따르지 않는 '임시 명세서'**를 제출 가능하되,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는 **기존 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정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고 출원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고안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일부

현행	개정안
(【기타사항】 (생략) <신 설>	(【기타사항】 (생략) □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일부

현행

10.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

10.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 규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시 명세서(청구범위 제출유예)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고,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는 명세서를제출하는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1조제6항

자.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명세서 및 도면을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 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시 명세서 제출 시 주의사항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Ⅰ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일부

현행	개정안
【보정구분】 (생략) <신 설>	【보정구분】 (생략) □ 임시 명세서 보정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일부

현행

1. 보정구분 및 관련 규정

보정구분	내용	관련 규정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생 략) ※ **기재요령** 1.~7. (생 략)
8. 【보정할 사항】란 (생 략)
<신 설>
나.~다. (생 략)
<신 설>

개정안

1. 보정구분 및 관련 규정

구분	내용	관련 규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시 명세서 보정	임시명세서를보정하는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3조제6항

2. (현행과 같음) ※ **기재요령** 1.~7. (생 략)
8. 【보정할 사항】란 (현행과 같음)
(7) 출원서 【기타사항】란의 임시 명세서(청구범위 제출유예) 항목의 표시를 출원서 제출 후 보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임시 명세서 보정의 경우
(1) 임시 명세서의 보정은 전문(全文)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정대상항목】란에 "전문보정"을 적고,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으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전문(全文) 보정된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별지로 작성하여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전문보정
【보정방법】별지와 같음
【보정내용】별지와 같음
(2) 임시 명세서 보정은 한 번만 가능하며, 임시 명세서 보정 이후 명세서를 다시 보정할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출원

임시명세서 제도와 연계, Free-type 명세서 첨부 후 출원서 제출
- 첨부 가능한 확장자: pdf, ppt, pptx, doc, docx, hwp, hlz (단일 파일만 가능)
  jpg, tif (복수 파일 첨부 가능)

* zip등의 압축파일은 악성코드 첨부 가능성이 있어 첨부 불가

보정

특허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명세서 보정
- 전문보정, 한번만 가능, 임시명세서 보정이후 다시 보정할 경우 명세서등 보정으로 제출
- 기한 내 임시명세서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취하한 것으로 간주

임시명세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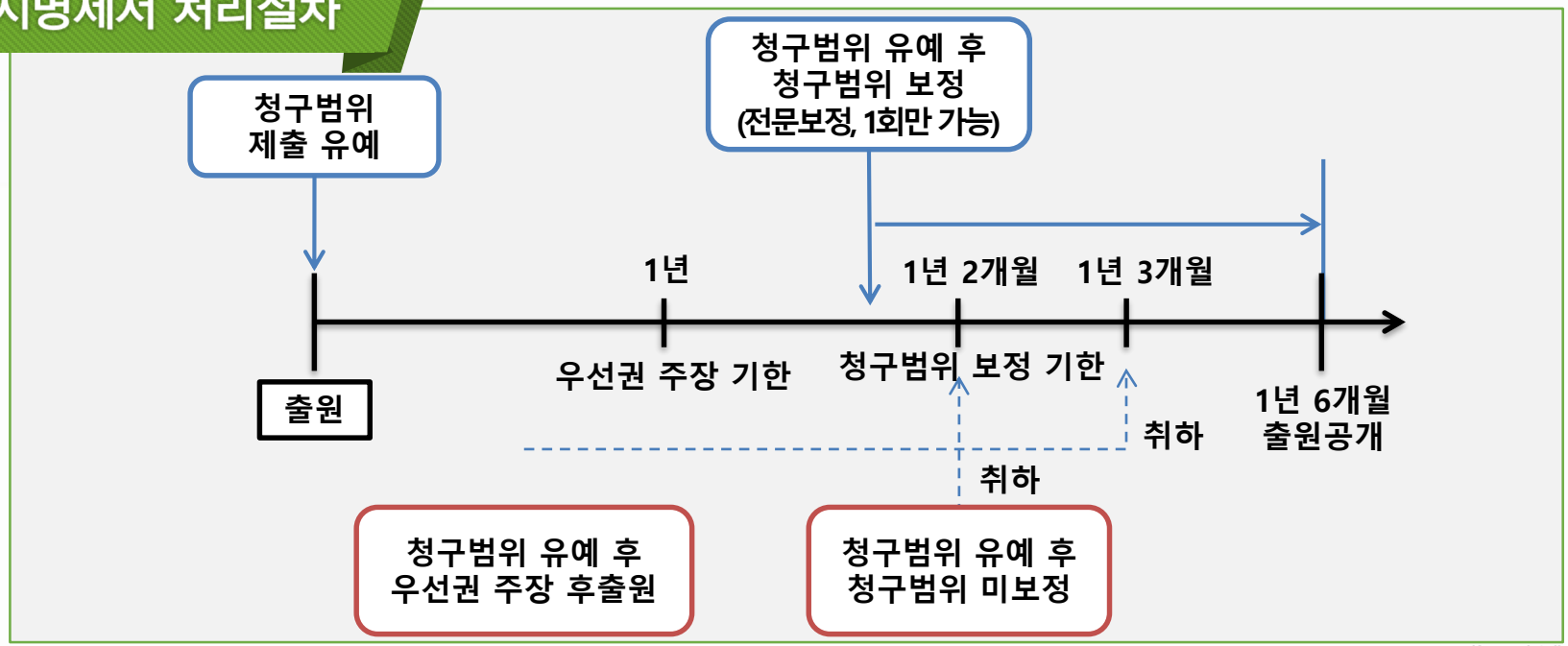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임시명세서 출원 절차	임시명세서 보정 절차
▸ 출원서 서식 기타 항목 중 '임시명세서(청구범위 제출 유예)' 선택 항목을 신설, 이를 선택한 경우 **PDF, 한글, MS워드, PPT, TIF, JPG** 파일 첨부 가능	▸ **임시명세서 보정 : 기존 양식에 맞추어 전문보정, 1회만 가능** ▸ 임시명세서 **출원후 1년2개월 이내 보정서 미제출시 취하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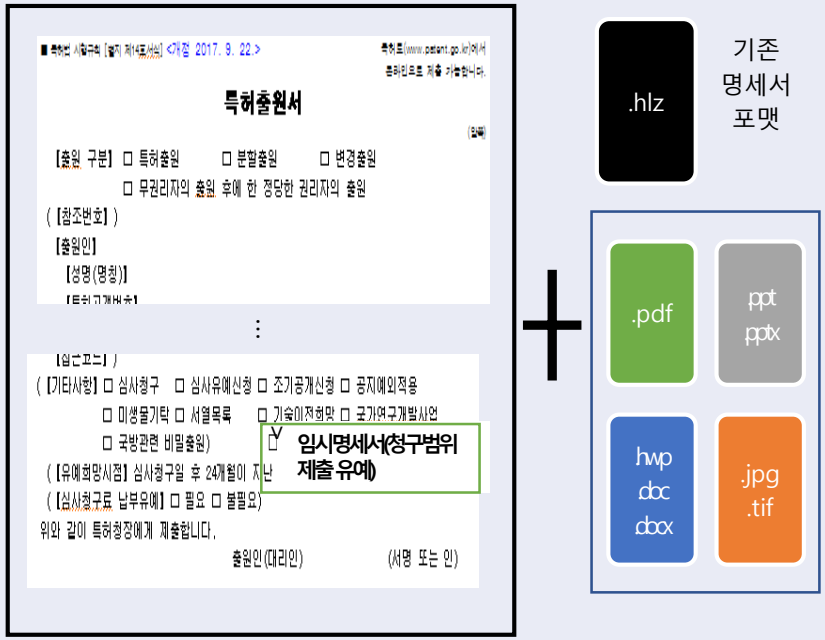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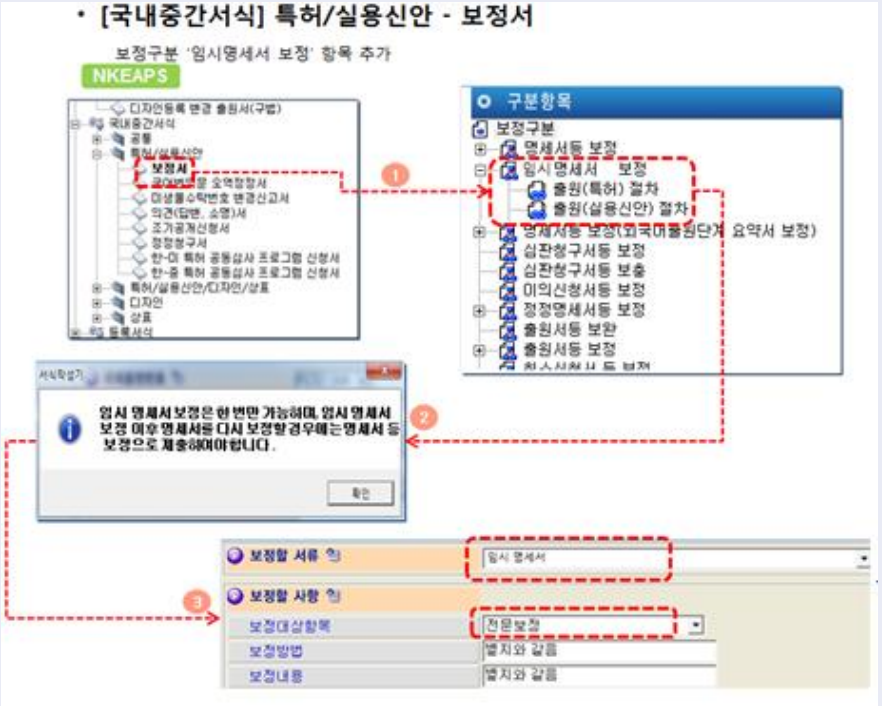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구분	임시명세서 출원서	이미지 일반출원서 (온라인 제출)
전자출원 SW	▸ 임시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체크항목 추가 ▸ 임시 명세서 선택시 심사청구 불가능, 임시명세서 제출 주의사항(취하간주, 보정 방법) 안내	▸ 이미지 명세서 여부 판단 기준 추가 ▸ 헤더파일에 이미지 명세서 체크값 추가, 뷰어 수정
접수 시스템	▸ 임시 명세서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스캐닝 전자화	▸ 전자화 의뢰 절차 구현 ▸ 접수증에 전자화 및 정정신청 기회 내용 기재하여 사전 고지
전자화	▸ 임시 명세서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스캐닝 전자화 (서지사항:텍스트, 명세서 : 스캐닝 전자화) ▸ 전자화결과 : 미통지(전수 검수)	▸ (온라인) 재전자화 → 교정 및 검증 → 특허로 전자화결과 수신함에서 확인 ▸ 비전자화 납품 절차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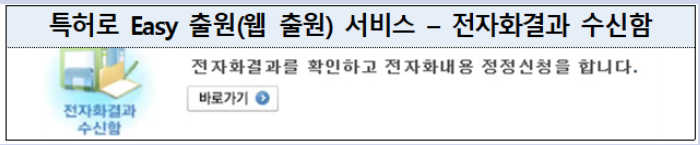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구분	임시명세서 보정서	이미지 일반보정서 (온라인 제출)
특허로	▸ 최종본 다운로드 미제공 ▸ 출원시 제출한 임시명세서 :서류철 복사로신청	현행과 동일
전자출원 SW	▸ 전문보정만 허용 ▸ 이미지 명세서 여부 판단 기준 추가 ▸ 헤더 파일에 이미지 명세서 체크값 추가	▸ 이미지 명세서 여부 판단 기준 추가 ▸ 헤더 파일에 이미지 명세서 체크값 추가
접수 시스템	▸ 이미지명세서인 경우 전자화 ▸ 접수증에 전자화 및 정정신청 기회 내용 기재하여 사전 고지	▸ 전자화 의뢰 절차 구현 ▸ 접수증에 전자화 및 정정신청 기회 내용 기재하여 사전 고지
전자화	▸(서면) 전자화 → 교정 및 검증 → 전자화결과 등기우편 송달 ▸ (온라인) 재전자화 → 교정 및검증 → 특허로 전자화결과 수신함에서 확인 ▸ 비전자화 납품 절차 구현	▸ (온라인) 재전자화 → 교정 및 검증 → 특허로 전자화결과 수신함에서 확인 ▸ 비전자화 납품 절차 구현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 – 임시명세서 제출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美 가출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 가능**

< 해외 특허청 전자출원(특허) 방식 비교 >

비교항목	KIPO	미국	유럽	일본	중국	WIPO(PCT)
명세서 파일포맷	XML (전용SW)	PDF, Word	PDF, Word	XML (전용SW)	XML (전용SW)	XML (웹변환기)
서식작성 및 제출	SW 방식 웹 방식	웹 방식	SW 방식 웹 방식	SW 방식	SW 방식	SW 방식 웹 방식
전자출원 수수료	4만 6천원	325 USD (약 36만원)	120 EUR (약 16만원)	14,000 JPY (약 14만원)	950 CNY (약 16만원)	1,030 CHF (약 115만원)

♧ **임시 명세서** 제출로 **먼저 출원일 확보 후,** 관련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권리화하는 출원 전략 안내**

< 특허전략 안내>

발명의 설명 범위 내에서 출원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발명을 부가하는 경우	보정의 범위 제약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출원일 선점 이후 청구항 포함하여 보정서 제출	출원일 선점 이후 우선권 주장 후출원 제출	출원일 선점 이후 취하 및 재출원 (한달 내 취하시 출원료 전액반환)

< 유의사항 안내>

- ▶ 임시명세서 출원서 제출 후 1년2개월 이내에 보정서 제출 없으면 **취하 간주**
- ▶ 임시명세서 보정시에는 **기존 명세서 양식에 맞추어 전문보정**으로 제출해야 하고, **임시명세서 보정은 한 번만 가능**하며, 임시명세서 보정 이후 명세서를 다시 보정할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하여야 함

Ⅱ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

(특칙 별지제23호 서식)
(실칙 제17조에서 특허법시행규칙 준용)

Ⅱ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개정 이유

o 제3자 심사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제도**(특허법 제63조의2)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제공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

* '18년 기준 정보제공 건수는 심사처리건의 약 0.4%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익명 정보제공이 가능한 일본의 경우 약 2.2%('17년 기준)의 이용률을 보임

- 중소기업은 **정보제공 사실이 공개될 경우** 업계 평판 악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우려**하여 정보제공제도 이용에 소극적

개정 내용

o **정보제출서 서식** 중 **제출인 정보 부분은**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일부

현행	개정안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사건의 표시】 【제출할 자료명】 【제출이유】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사건의 표시】 【제출할 자료명】 【제출이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일부

현행	개정안
2. 【제출인】란 **<신 설>**	2. 【제출인】란 **가. 【제출인】란은 제출된 정보의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만들어 적으며, 익명으로 제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출 시에는 활용결과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4)** (생 략)	**나. 【제출인】란의 기재방법** **(1)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가)~(라)** (현행 가목 (1)~(4)와 같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2)** (생 략)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2)** (생 략) **라.** 공통 **(1)~(2)** (생 략)	**(2)**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가)~(나)** (현행 나목 (1)~(2)와 같음)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가)~(나)** (현행 다목 1)~2)와 같음) **(4)** 공통 **(가)~(나)** (현행 라목 (1)~(2)와 같음)
<신 설>	마. 【제출인】란의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대리인】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Ⅱ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현행 (전자출원SW)	개선(안)

※ 정보제출서 제출인 정보를 입력받지 않으면 전자서명이 불가능하므로 제출인 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은 하되 제출인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구현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에 따라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

※ 제출인 란의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대리인 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보제출서 제출인 정보 제공관련 안내 문구 】

- [제출인]란은 제출된 정보의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제출인 정보 비공개시 활용결과를 통지 받을 수 없습니다.

Ⅲ 국가R&D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 등 개정

개정 내용

o 출원서 서식에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과제번호 입력란을 추가하고,**
과제정보 입력 용어를 **NTIS 및 R&D 표준 용어와 통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실용신안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뒤쪽

현행	개정안
10.【기타사항】란 가. ~ 바. (생 략)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고유번호】,**【부처명】,【연구관리전문기관】**,【연구사업명】,【연구과제명】,【기여율】,**【주관기관】** 및【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개 또는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의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연구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확실하지 않으면 주관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기관명)을 적습니다.**【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기여율】란은 **1개 사업인** 경우에는 1/1로 적고, **2개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해당사업별** 기여율을 ○/□과 같이 분수로 적되,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적습니다.【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10.【기타사항】란 가. ~ 바. (생 략)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고유번호】,**【과제번호】,【부처명】,【과제관리(전문)기관명】**,【연구사업명】,【연구과제명】,【기여율】,**【과제수행기관명】** 및【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기여율】란은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1개인** 경우에는 1/1로 적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별** 기여율을 ○/□과 같이 분수로 적되,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당해년도연구기간(협약의 시작일과 협약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Ⅲ 국가R&D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 등 개정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개정 내용

O 출원서 서식에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과제번호 입력란을 추가하고,**
과제정보 입력 용어를 **NTIS 및 R&D 표준 용어와 통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실용신안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뒤쪽

현행	개정안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신 설>** 【부처명】 농촌진흥청 **【연구관리전문기관】** 농촌진흥청 (생 략) **【주관기관】**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07. 4. 1. ~ 2011. 12. 3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신 설>**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재단 (생 략) **【주관기관】**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06. 9. 1. ~ 2010. 3. 31.**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농촌진흥청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농촌진흥청 (현행과 같음)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4. 1. ~ 2019. 3. 3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현행과 같음)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2. 1. ~ 2019. 1. 31.**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개정 내용

o 출원서 서식에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과제번호 입력란을 추가하고,**
과제정보 입력 용어를 **NTIS 및 R&D 표준 용어와 통일**

현행 (전자출원SW)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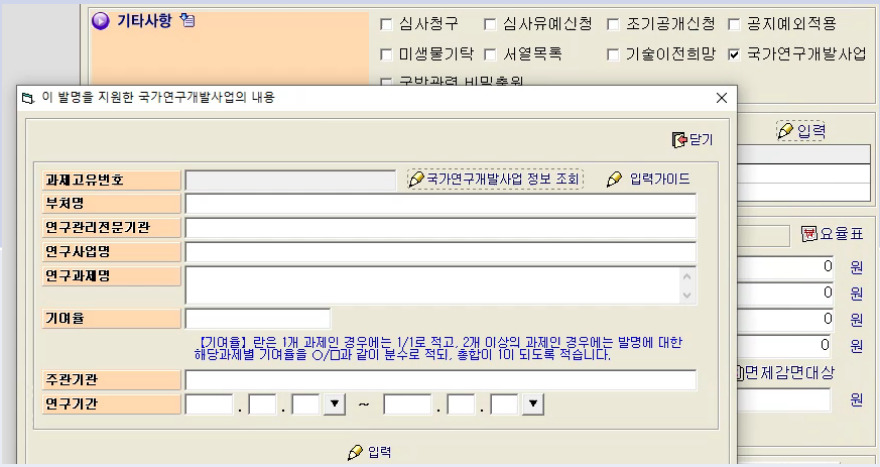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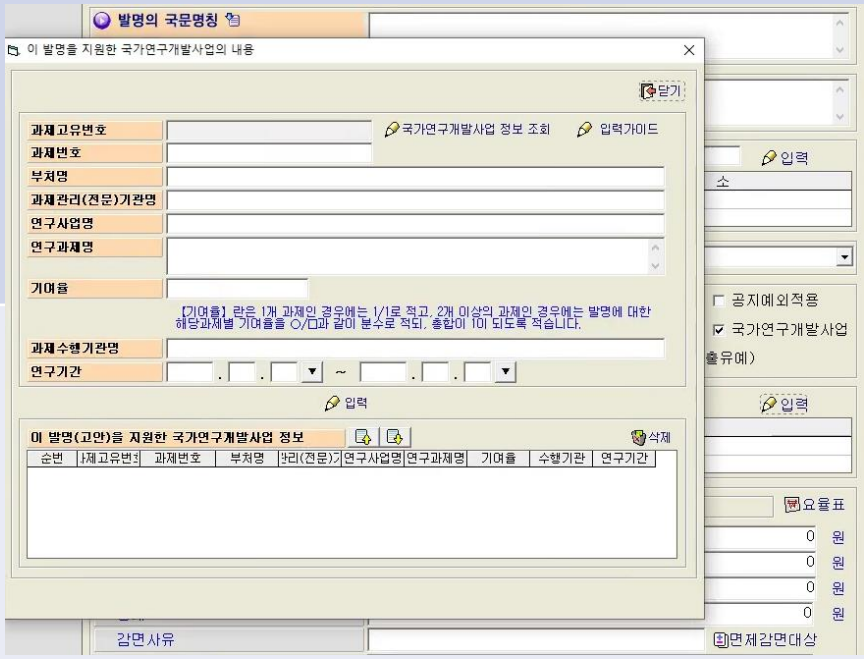

Ⅳ 기타 개정 수요 반영 – 특허(등록)증에 관인 날인 추가

Ⅳ 기타 개정 수요 반영 – 특허(등록)증에 관인 날인 추가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특허(등록)증 발급시 **관인없이 기관장 서명만 기입**되고 있어 증명서의 신뢰성 저하
  - **외국어특허(등록)증에 관인 날인 추가**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제26호의9·제28호~제28호의9서식,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제2호의9·제4호~제12호서식 등 >

현행 (외국어특허(등록)증)	개선(안)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 명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 인 서 명

감사합니다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